

## [1] 거짓청구 영양기관 공표제도

### □ 제도개요

주요사항	내 용
법제정	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(위반사실의 공표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~74조
공표기준	거짓청구금액 <b>1,500만원 이상 (또는) 거짓청구금액비율 20% 이상</b> * 공표여부 결정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·정도·횟수·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·의결
공표사항	요양기관 명칭·주소·대표자 성명, 위반행위, 행정처분 내용 등
공표방법	보건복지부·건강보험심사평가원·국민건강보험공단·관할 지방자치단체·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<b>6개월간 공고</b> *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, 방송 등에 추가 공표 가능
공표 심의위원회	보건복지부장관 임명(위촉) : <b>총 9명</b> - 소비자대표, 언론인, 변호사, 의약계(3인), 보건복지부·건강보험심사평가원·국민건강보험공단
공표절차	① 1차 심의 ⇒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⇒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⇒ ④ 2차 심의(재심의) ⇒ ⑤ 대상자 최종확정 및 공표

### 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근경로

· 홈페이지 초기화면 → 알림 → 명단공표 → 거짓청구 영양기관 명단 공표

## [2]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

### □ 요양기관 종별현황

(단위: 개소)

계	의원	한의원	병원*
37	21	13	3

\* 한방병원 1, 요양병원 1개소 포함

### □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

(단위: 개소)

계	3,000만원 미만	3,000만원 이상 ~ 6,000만원 미만	6,000만원 이상 ~ 9,000만원 미만	9,000만원 이상
37	20	11	5	1

※ 최고 거짓청구금액 3억5462만3000원

※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약 24.5개월, 평균 거짓청구금액 4408만6000원

### □ 거짓청구금액 비율별 현황

(단위: 개소)

계	5% 미만	5% 이상 ~ 10% 미만	10% 이상 ~ 15% 미만	15% 이상 ~ 20% 미만	20% 이상
37	21	5	7	1	3

※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 66.3%

- 거짓청구금액 비율(%) = (총 거짓청구금액/요양급여비용 총액)×100

### [3] 거짓청구 사례

#### □ A요양기관

##### 【입원료 등 거짓청구】

- 병원직원 기숙사, 환자 가족들의 임시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환자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(3억5462만3000원)

(조치사항) 20개월간 총 3억5462만3000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, 업무정지 98일, 명단공표, 형법상 사기죄 고발 및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 의뢰

#### □ B요양기관

##### 【내원 거짓청구 및 비급여대상 이중 청구】

- 요양기관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후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(3688만2000원), 환자에게 부항술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그 시술비용을 청구하거나(3099만5000원), 비만관리 치료 후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(1399만7000원)

(조치사항) 36개월간 총 8187만4000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, 업무정지 84일, 명단공표, 형법상 사기죄 고발 및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 의뢰

## [참고자료 4] 거짓·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

- ◇ 요양기관의 거짓·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, 업무정지(또는 과징금) 행정처분
- ◇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,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, 형법상 형사고발 조치

### 1] 거짓·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

- (부당이득 환수) 요양기관이 거짓·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
- (업무정지)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
- (과징금) 요양기관 이용에 많은 불편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(부당금액의 2~5배 이내) 처분

### 2]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

- (자격정지)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
- (형사고발)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한 자에 대해,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(형법 제347조 사기죄)

※ 조사거부, 서류제출명령 위반, 거짓보고의 경우 1년 이내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

- (명단공표) 거짓청구금액이 1,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% 이상일 경우 보건복지부·건강보험심사평가원·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